

**2026년 축산환경관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6. 8.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I

감사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관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요 업무를 점검하여 사업추진의 방법 개선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 감사대상기관 : 축산환경관리원(1본부 2실 4부 1사무소)

□ 감사범위 및 중점 감사사항

- (감사범위) 최근 3년간('23년~'26년)의 기관 운영,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중점감사사항) 회계, 계약, 복무 등 기관운영 분야와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관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사업분야 점검
 - * 복무기강 해이, 비위·일탈, 채용실태 등 공직기강 점검과 다수인 민원·일상 감사 처리 및 자체감사결과 처분이행 실태 점검 병행 실시

□ 감사기간 및 인원

감 사 일 자	감 사 자			출장지역
	구성	직급	성명	
'26.4.13. ~ 4.24. (10일간) * 예비감사 : 4.1.~4.3.	1반	사무관	이장현	세종시
		주무관	송성호	
	2반	주무관	안정환	

□ 감사결과 총괄

구분	합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금액)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일반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시정 완료 (금액)	모범			
합계	14	-	-	-	-	-	-	3	3	-	7	-	-	-	1	-	-	-

II

감사 결과

1

회의비 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대상기관 수용]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 ☐ 2025년도 ‘축산환경연찬회 및 포럼’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목적과 무관한 회의, 내부 직원 회의 등을 개최하여 회의비를 임의 사용함

조치 방향

- ☐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사업목적과 무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을 임의 사용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회계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영전략실에 “부서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부서주의)

2

자체 예산집행지침 수립 미흡 [주의요구, 대상기관 수용]

-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 ☐ 관리원은 ‘24년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별도의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지 않았음

조치 방향

- 축산환경관리원장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자체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경영전략실에 “부서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부서주의)

3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개선요구·통보, 대상기관 수용]

-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8조에 따르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 여행에 우선 사용하는 등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국외여행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나
- 관리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일부 임직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 마일리지와 혼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

조치 방향

-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시고, (개선)
-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회수하시기 바람 (통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 목록 및 공개의 구체적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지 않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문서)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 정보(문서)목록 공개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지 않음

조치 방향

-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정보공개운영 지침」에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목록 및 세부기준, 정보(문서)목록 공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시기 바람 (개선)

-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유연근무 사용 시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로 인한 사무실 대기는 일반근무가 아닌 별도의 근무로 유연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 일부 직원이 출장일에 유연근무를 사용 후 출퇴근지정을 하지 않아 주 40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당직근무일에 18시 이후까지 근무하도록 유연근무를 신청하여 당직으로 인한 근무지 대기를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였음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맞지 않게 유연근무제도를 관리·운영한 축산환경관리원에 “기관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미확인·부족 근무시간에 대하여 연가 차감 및 연가보상비 회수 등 조치하시고, 유연근무제를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6

제한경쟁채용 관련 사전 공개 미흡 [통보, 대상기관 수용]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나,
- 관리원은 소속직원을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채용하면서 누리집 등에 사전 예고하지 않음

조치 방향

- 구직자 등이 제한경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예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7

직원 채용서류 보관 규정 미흡 [개선요구, 대상기관 수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채용서류의 반환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르면 공공기록물 지정 검토 후 내부 규정을 마련한 기관에 한해 채용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자체 규정에 채용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로 설정하지 않고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는 근거만으로 탈락자 채용서류를 보관함

조치 방향

- 축산환경관리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영구보존이 필요한 서류는 공공기록물로 지정·관리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파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람 (개선)

8

공직기강 준수 및 일상감사 업무 미흡 [통보 3, 대상기관 수용]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2026. 4., 기후부)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운휴일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근 주차시설 주차 여부를 일일 1회 단속하여야 하나

- 관리원 인근 주차시설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 사례(1건)가 발견 되었으며 인근 주차시설에 대해 별도의 단속을 실시하지 않음
- 「공공기관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전직원 대상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리원 내 소화기에 대해 점검표를 부착하여 월 1회 이상 외관점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나
- 소방교육을 연 1회만 실시하였고, 관리원 내 소화기에 점검표를 부착하지 않음
- 「감사규정」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및 건당 50만 원 이상 업추비 집행 전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 일상감사 대상 수의계약 및 업추비 집행 3건에 대해 일상 감사를 의뢰하지 않음

조치 방향

-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청사 및 인근 주차시설에 대한 단속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 2부제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고, (통보)
- 「공공기관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 및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시고, (통보)
- 「감사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인 수의계약 및 업무추진비 집행을 의뢰하지 않아 감사부서에서 계약 및 집행 전 적정성 검토를 미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하시기 바람 (통보)

- 「동물보호법」 제66조에 따르면 관리원은 매년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방문하여 사육밀도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나, 사육밀도의 경우 중요 항목임에도 관리원에서 현장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별 사육두수를 주기적으로 신고받고 있음
- 그런데 관리원에서는 사육두수 등 이력제 관련 정보를 동물복지축산농장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적시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조치 방향

-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물이력제 관련 정보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나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함

- 이에 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현장 맞춤형 매뉴얼과 포스터를 자체 제작·배포하여 현장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매뉴얼 및 포스터 등 안전관리 자료 제작·배포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한 담당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천하시기 바람 (통보)